

# 유럽공동체(EU) 국가들의 설계공모제도와 독일연방국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 공모 수상 심의위원회 수상결정 회의 참관기

## Architectural Competitions in the EU-States & Experiencing the Jury session for the "House of Education" in the City of Bonn/Germany



이선구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by Lee, Sun-koo

- 베를린 공과대학교 (TU Berlin) 건축대학 교육·문화·사회 건축연구소 공학박사
- 베를린시 Messrs. Candilis-Josic-Woods & Schiebelheim 외 베를린 자유대학 (FU Berlin) 등 설계실무 건축사



http://www.sungshil.ac.kr/journal/feature/article/2009/02/24/57p

지난 30여년 동안의 건축실무와 교육 경험은 필자로 하여금 우리 건축계, 특히 설계업계의 장래를 이 분야를 지망하는 후진들을 위하여 개선하는데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한가지는 이 분야를 정열적으로 시작코자 하는 후진들이 현재보다는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공모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유능한 후진들에게 보다 넓은 업계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오늘날 전(全)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연계된 건축설계 업무는 어느 한 나라의 관행과 제도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며, 종종 이러한 비교는 현재의 만족스럽지 못한 자국(自國)의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건축사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 방법을 위한 연구는 ‘건축사 용

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기초조사 – 유럽 각국의 건축사 업무와 대가기준에 관하여<sup>1)</sup>를 통하여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건축사 업무의 내용을 각 단계별로 여하히 규정하여, 건축서비스 소비자인 건축주와 공급자인 건축가/계획가들이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성취하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필자는 2008년 10월 17일 독일연방국의 전(前)수도 본(Bonn)시의 ‘교육의 집(Haus der Bildung)’ 설계공모 수상 심의위원회(Preisgerichtssitzung) 당선작 결정 심의에 외부손님으로 참가하여 이들의 결정과정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래에 독일 연방국 및 유럽공동체(EU) 소속 국가들의 설계 공모제도의 형편을 개관하는 첫 번째 글을 시작으로 이를 공모 제도가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본(Bonn)시의 ‘교육의 집’ 설계공모 수상 심의 위원회 참가기를 통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1) 최종보고서, 2009.2.24, 57p

1993년 이래 유럽 경제구역(EU)내에서의 제반(諸般)서비스 성취 위탁에 관한 원칙(92/50/EWG)은 위탁 액(額)이 20만 유로(한화~2억 4천만 원)가 넘는 경우의 모든 서비스는 “유럽 전역으로 부터의 경쟁자들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 설계공모를 포함하는 계획서비스 역시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건축 설계공모 허용구역의 확장은 유럽경제구역에 속한 나라들에 서 이해의 양극화(兩極化)현상을 가져왔다. 유럽 법은 국내시장의 개방, 상호 정보 교환의 의무 및 차별금지와 더불어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계획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 확보라는 경제적인 고려와 건축적 정체성을 위한 지역연고라는 관점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보존코자하는 이해관계 또한 가지고 있다.

###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분야에서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1995)

2003년 12월 22일자 판(版)은 1996년 1월 9일자 판 대신 그간 도입된 유로화(EURO 貨)로의 변화, 한정공모제도의 재조절 및 실무에서의 적용을 포함하며, 건물과 기술시설 및 도시와 경관구성을 위한 예시적인 설계실현을 위한 설계공모제도의 핵심적 도구이다.

이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예시적인 설계들은, 자신들의 창의력을 타인들과 직접 비교 할 것을 종용하며, 특별히 나이도가 높거나 일상의 계획임무에 공히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가장 적절하며, 각 분야간의 협업(協業)과 일반적인 양질(良質)의식을 고취한다.

설계공모는 공모 참가자들의 의명성으로 인하여 계획임무 수여(授與)를 재현(再現)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들만 따르게 함으로써, 공모 참여자 개별 인물(人物)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업적으로만 설득시키게 하는 기회균등을 부여한다.

독자적인 설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상의 설계개념과 최적의 ‘파트너’를 공모주관자의 차후 결정을 위하여 집중되고 투명한 절차 속에 찾아 낼 수 있다.

오랜 설계공모 전통(최초의 공모규칙의 도입은 1867년)을 배경으로 독일연방국의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GRW 1995)’은 1977년 이후 유효한 원칙을 토대로 계속 발전되어, 설계공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평하며 동반자적 협력과 사회적, 경제적, 생태(生態)적 및 기술적 목표들을 추구하여 독일연방국의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고자 한다.

### 유럽제국의 형편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유럽국가들 중 건축물량이 제일 많은 독일연방국의 경우 2,430억 유로(~29조 1천 6백억 원), 프랑스 1,350억

과 영국 1,050억으로, 세 나라의 국민국내총생산(GDP) 중 건축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 독일 12%, 프랑스 10%, 영국 8%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높은 공공투자 비율(20%)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낮은 독일 연방국(13%)에 비하여 공모제도는 덜 발달되어 있으며, 프랑스(40%)와 스위스(36%)가 총 건축물량 중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17개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가 430, 독일 92, 이탈리아와 덴마크 각 30, 영국과 스페인 6, 네덜란드 1개의 공모공고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유럽경제구역 내 서비스 제공원칙(92/50/EWG)’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공모제도가 활용되는 나라들(프랑스 29%, 덴마크 27%, 이탈리아 13%, 독일 10%)과 공모제도 대신 여타 절차를 선호하는 나라들(네덜란드, 영국 및 스페인 공히 1%의 공모)로 나눌 수 있다.

### 유럽공동체 서비스 제공원칙 92/50/EWG

서비스 제공원칙은 4개의 절차를 통하는데,

- ‘개방절차’는 관심을 가진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안을 할 수 있고,
- ‘비(非) 개방절차’는 위탁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제안을 할 수 있고,
- ‘협상절차’는 위임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청하여 수탁조건에 관하여 협상하는 개별국가 단위의 절차이며,
- ‘공간계획, 도시계획,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있어서 위임자에게 계획을 제시하고 공모 심사 위원회를 통하여 수임자를 결정하는 ‘설계공모’ 절차가 있다. 위의 ‘개방절차’, ‘비 개방절차’, ‘협상절차’ 및 ‘설계공모’ 제도 모두 일반 공모 의무 및 어느 한 국가에만 제한된 공시 금지 원칙을 따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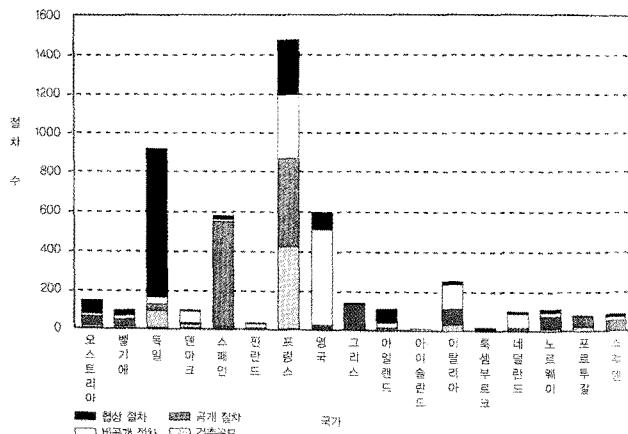
‘개방절차’는 모든 관심있는 자들에게 제안제출 가능성을 부여하는데, 과업이 정확하게 기술됨으로써 제시된 가격에 따른 위임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 허용된다. 1999년 통계에 의하면 공모과업의 33%가 이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비(非)공개 절차’는 공모주관자가 관심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네 절차 중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었다.

‘협상절차’는 설계 및 계획임무가 처음부터 확정하기 어려워 위임 협상 과정동안에야 비로서 과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1999년의 공시된 과업의 23%가 협상절차를 통하여 부여되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설계공모’를 선호하며, 독일이 ‘협상절차’를, 스페인이 ‘공개 절차’를,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영국 등이 ‘비(非)공개 절차’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독일연방국이 유럽국가들 중 가장 큰 건축물량을 차지하며, 1998년 278개 설계공모가 실행되었고 그 중 92개가 유럽 전역에 걸친 공모였다.



〈표 1〉 위임 절차 및 국가에 따른 건축 및 자문 엔지니어 성취의 유럽 관보에 공시된 유럽 전역에 걸친 공모 광고의 수(1999)

인구 100만명당 건축가 수는 독일 1,135인, 프랑스 447인, 영국 504인으로 독일연방국의 건축사 수는 ‘과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직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소가 80%, 프랑스의 4인 미만 사무소 90%, 영국의 10인 이하 사무소는 60%이다.

1993년 서비스 제공원칙 도입 아래, 지역적으로 국한된 전통적인 공모는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게 되었고, 1995년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야에서의 공모원칙과 기준(GRW1995)’이 관리규정으로 자리 잡고, 이 규정 속에 ‘공개공모’와 ‘제한공모’가 주요원칙으로 제시되고, 두 공모는 모두 ‘아이디어 공모’와 ‘실현공모’의 두 단계로 실행되며, 제한공모의 형태로서 ‘한정된 공개공모’, ‘초대공모’와 ‘협력적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그간의 유럽전역에 걸친 공모로 인한 경험은 점증하는 공모 참가자들의 수로 인한 점점 줄어드는 수상기회, 행정절차의 증대로 인한 공모수의 감소, 제한공모의 경우 처음부터 짧은 계획가(건축사)들의 예선에서의 배제/탈락 가능성 증대, 공모 장기화 – 공모공시부터 수상작 결정까지 보통 8개월 –로 인한 비용증대, 많은 참가자 수로 인한 계획서비스와 경제적인 소모 및 대형사무소들이 공모에 이길 가능성이 빈번해 졌다는 등의 비판 또한 유발하였다.

## 설계공모 유형

‘아이디어 공모’는 설계과제를 혁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위하여 가능한한 많은 관심있는 계획가들에게 개방되며, 실제로 도시계획적인 주제 또는 신선한 디자인 아이디어 수집을 위하여 거행된다.

‘실현공모’는 대부분 제한된 형태의 공모로서 위임의 실현을 목표로 일상적 과업을 다룬다. 실제 일반에 개방된 아이디어 공모와 참가가 제한적인 실현공모가 가장 흔한 경우로서, 독일연방국의 경우, 1998년 264개 실행된 공모 중, 초대공모가 107개, 부분적으로 개방된 공모 72, 개방공모가 85개였다.

독일연방국이 실현공모를 한 단계 또는 두 단계의 공개공모, 제한된 공개공모, 초대공모, 협력적 절차 등으로 실행함에 비하여, 이웃

네덜란드는 1999년 총 35개 공모 거의 전부가 공개공모로 시행되었다. 연간 총 1,000여 공모에 이르는 프랑스와 1995~97년 동안 50여 공모에 불과한 영국(왕립영국건축사협회, RIBA의 통계)의 경우는 유럽지역 개별국가들의 계획 위임(委任) 관행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 공모참가의 판단기준

제한된 공모의 점증하는 추세에 비추어 누가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응모하며, 어떤 선발기준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공모 참가기준은 국제공모와 여러 나라들간의 계획서비스 교환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제한공모를 위한 판단기준은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 스케치’의 구체적인 문제와 상관된 설계의 질과 계획사무소들의 전문가적 적성의 증명, 참가자의 경제적 성취능력 및 주천서와 경험 등이다.

누가 미리 선발을 하는가가 문제인데, 독일연방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독자적인 선발위원회가, 영국에서는 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스페인과 스위스에서 건축주나 그 대행인들이 이 임무를 맡는다.

## 계획가(건축사), 시공자와 투자자 3자 참여 협력모형

전통적 형태의 공모는 설계와 비용제안이 분리되어 판단되며, 선발 심의위원회는 설계의 계획적/건축적 질(質)을 심의 한 후, 제출된 서류를 동반하는 시공자의 비용제안과 연계되는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수상자들 중에서 위임결정을 하게된다.

또 다른 공모방식은 건축주가 공모고시에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계획은 이 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의 비용제안이 공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건축사와 시공자간의 협력형태는 예컨대 건설업자가 건축사를 위임 심지어 고용하느냐 또는 건축사와 건설업자 쌍방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설계를 발전시키느냐는 문제에 까지 이르게 된다.

독일연방국의 경우, 건축사와 시공자가 협력하는 ‘연합공모’ 외에도, 건축사와 투자자가 협력하여 하나의 건축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투자자 공모’ 제도 또한 볼 수 있다.

영국의 ‘설계와 건축(Design and Build)’ 공모와 ‘개발업자 주도 공모(Developer-led Competition)’의 경우 건축사, 시공자와 투자자의 협력이 전제 조건이며, 프랑스의 ‘설계개념-실현공모(Concours Conception-réalisation)’의 경우 건축사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제안한다.

## 사상(施賞) 심사위원회의 구성

독일연방국, 이탈리아, 스위스와 체코와 슬로바키아 국에서 시장 심사위의 구성은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의 전체 위원수에 대한

비례로 최소 1/3부터 50%를 점한다.

심사위원회의 수임(授任)에 관한 지시권한(指示權限)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독일연방국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수임주천을 할 수 있고, 공모 주최측(공모자)은 3인의 수상자 중 하나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심사위의 구성은 통상 7~11인의 흘수이며, 이 중 '전문 심사위원' 수는 과반수에, 최소 2인이 독립적 전문가이어야 한다.

'대상물 심사위원'은 해당 지역형편과 공모과제에 친숙하여야 하며, 심사위 위원장은 전문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프랑스는 심사대상이 20만 유로(~2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 최소 1/3이 건축사이며, 심사위원 5~8인 중 1/3이 전문가(건축사)와 2/3가 분야별 엔지니어, 재정전문가 및 적산사(積算土, quantity surveyor)로 구성되는 영국의 심사위원회는 공모자가 소수로서 심사위에 대표되고, 종종 왕립건축사협회(RIBA) 공모국 위원이 심사위원이 된다. 심의위의 결정에 추천된 건축사의 수임료 제안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 건축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모 참가자의 익명성(匿名性) 여부

전통적으로 공모절차에 있어서 설계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을 가진 프랑스의 경우처럼, 공모작품 제출 이전에 공모자와 협의 또는 예비선발이 가능한 점을 제외하면, '유럽 서비스 제공 원칙 7조'의 '심사위원회는 익명으로 제출된 공모작품에 근거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에 충실히 유럽 대개 국가들에서의 건축공모의 익명성은 보장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익명성 요구 압력하에 공모절차를 수정하고 있다.

공모작품 제출 이전에, 공모 계획과제의 난도(難度)로 인한 공모자와 공모참가자들 및 시상위원회 위원들과의 대담을 통한 추가설명의 기회가 '콜로퀴움(colloquium)' 등을 통하여 부여되는 독일연방국의 '협력적 절차' 또한,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바람직한 의견교환, 대화를 통한 상호학습, 정신적/창의적 성취제기의 관점과 더불어 익명성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논거이다.

### 공모참여자의 보수(報酬)와 공모작품들의 전시

유럽각국들의 제한공모의 경우 참가자들의 공모비용은 초대공모시 보상된다. 프랑스는 공모대상 20만 유로이상의 제한공모 참가자 모두에게 계획서비스 비용의 80%를 보상하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 초대공모에 한하여 보상된다.

공모결과의 전시는 독일의 경우, '공간계획, 도시계획 및 건설 분

야의 설계공모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의무적이지만, 프랑스,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

공공의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 결정을 찾아내는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공모참가 작품들의 전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공모 결과를 출판함은 특히 젊은 세대 계획가들에게 가시효과(可視效果)적 의미를 가지며, 공모전시를 통하여 계획가와 비(非)전문가 모두가 공동 토론의 마당에서 건축이 갖는 사회·문화·정치적인 제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다.

### 유럽지역에서의 설계공모제도의 전망

유럽국가들 중 인구가 제일 많은 독일연방국을 비롯한 유럽제국들의 건축공모 형편을 개관한다면, 한마디로 '유럽의 건축공모'가 아니라, '유럽에 다양한 공모제도가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1992년의 유럽공동체 서비스 제공원칙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도 통하는 국제적으로 유효하며 적용가능한 공모절차는 유럽 각국에서 관찰될수 없었다. 공모형태에 관한 다양한 개별 국가적 해석은 해당지역의 건축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자체적 타당성을 갖게되며, 유럽 전역에 걸친 공모절차 획일화는 의미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유럽 전역에 걸쳐 공모된 건축 및 계획서비스의 1~2%만이 외국에 발주되고 있으며, 공모의 국제화에 관한한 대규모 사무소들은 초대공모에, 소규모 사무소들은 공개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 유럽지역 공모형태로 부터의 교훈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한국의 공모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 유럽공모제도로 부터의 교훈은 무엇일까?!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아래, 외국 건축사사무소들의 건축사 해외수출(독일연방국의 architects export, 프랑스의 '수출을 위한 프랑스 건축사(Architects Français à L'Export, AFEX)'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로부터 미국 건축대학들로 유학 온 건축학도들의 미국 건축사사무소들의 인턴십(internship)과정을 통한 (한국)건축 설계시장에의 진출계획 등을 감안 할 때<sup>2)</sup>, 국외로 부터의 국내 설계시장에의 도전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축주들의 취향에 외국 건축사사무소들의 건축설계의 질이 월등히 우수하다든지 이들의 건축설계비가 국내 수가 수준과 비슷할 경우라면 이러한 도전은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에 설계공모제도의 합리화를 통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이 우리 건축계가 취하여야 할 최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2) Anderson, G.: 'In some niches, still reaching for star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7, 2009, p.11이후 참조.

미합중국의 국경을 넘어, 외국태생의 건축학도들의 미국 건축사사무소 「인턴십」과정을 통한 외국계 건축사후보 채용으로 차후 중국, 인도, 이스라엘(또 한국 등)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정황을 잘 서술하고 있다.